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순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7

발의연월일 : 2026. 8. 19.
발의의원 : 전순애 의원,
김이석 의원, 이상봉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윤리심사, 겸직신고 및 징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윤리심사 및 징계 관련 사항 정비(안 제6조, 제10조)

나. 겸직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다.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제18조)

라. 징계 기준 및 금품등 수수 가액 범위 정비(별표 3, 별표 4)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의장(이하 “의장” ”을 “의장(이하 “의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사항이 군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 직위의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위원회 보임을 금지 할 수 있다.

제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달성군의회”를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 겸직기관명, 겸직직위 및

보수 유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겸직 신고”를 “겸직신고”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품위유지 · 청렴)를 위반한 경우

8. 「지방자치법」 제82조 제척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지방자치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회의장 질서유지 및 발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

11.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

사 등”을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상임 위원회 ·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기”를 각각 “본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를 “본회의”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을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징 계 유 형 및 기 준(제10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유형 : 위반행위의 유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품위유지·청렴) 위반, 같은 법 제82조 제척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별표 1의 윤리강령 또는 별표 2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등

 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회의장 질서유지·발언 의무 위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의무 위반·겸직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신고·사임권고 미이행 등

2. 유형별 징계양정 : 위반행위의 유형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위반의 정도, 동기, 결과, 개전(改悛)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양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예시)	고의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의원의 의무(품위유지·청렴) 위반, 제척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상 징계사유 해당 행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정청탁·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행위,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등	제명 또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회의장 질서유지 방해, 모욕 등 발언·발언방해 금지 위반, 겸직 등 금지 위반·겸직 허위신고·사임권고 미이행 등	제명 또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비고

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한다.

나.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더 무거운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라. 징계의 구체적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7장에 따른다.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15만원으로 하되,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제3호 단서에서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생 략)	**제6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	**제7조(겸직신고)** ① ---------- ---------- ----------

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사항이 군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 직위의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위원회 보임을 금지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의장은 의원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신고 내역을 점검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후단신설>	⑦ ---------- ---------- ---------- ---------- -------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 겸직기관명, 겸직직위 및 보수 유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생 략)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 겸직신고 ---------- ---------- ---------- ---------- --.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징계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	2. 제7조제6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거부.	6. 제9조제4항---------- -.
<신 설>	7.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품위유지·청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8. 「지방자치법」 제82조 제척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9. 「지방자치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회의장 질서유지 및 발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1.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	① ---------- 심의 등 ---------- ---------- ---------- ---------- ---------- ---------- ----------

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 의회---------- ----------.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 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	**제12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 -- 위원회 ---------- ---------- ---------- ---------- ---------- ---------- ----------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 ----------

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군 및「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 심의회 ·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 ---------- ---------- ---------- ---------- ---------- ---------- ----------.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1. ---------- 위원회--------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0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제20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① ---- 본인 ---------- ----------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 본인 ----------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본인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2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현행 제1항과 같음)
[별표 3]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별표 3] 징 계 유형 및 기 준(제10조 관련)**

[별표 3]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목적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목적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3】

징 계 유 형 및 기 준(제10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유형 : 위반행위의 유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품위유지·청렴) 위반, 같은 법 제82조 제척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 별표 1의 윤리강령 또는 별표 2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등
 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회의장 질서유지·발언 의무 위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결적 등 금지의무 위반·겸직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신고·사임권고 미이행 등
2. 유형별 징계양정 : 위반행위의 유형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위반의 정도, 동기, 결과, 개전(改悛)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양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예시)	고의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의원의 의무(품위유지·청렴) 위반, 제척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상 징계사유 해당 행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정청탁·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행위,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등	제명 또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다.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회의장 질서유지 방해, 모욕 등 발언·발언방해 금지 위반, 겸직 등 금지 위반·겸직 허위신고·사임권고 미이행 등	제명 또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비고

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한다.

나.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더 무거운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라. 징계의 구체적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7장에 따른다.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5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15만원으로 하되,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제3호 단서에서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7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별지 제4호 서식](제11조제4항 관련)

■ [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5]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7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별지 제4호 서식](제11조제4항 관련)

■ [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의 견 서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분회의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제11조제5항 관련)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2026.3.5. 일부개정, 2026.7.1. 시행)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 ·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조례)」(2025.7.18. 제정, 2025.7.18. 시행)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